

(8,149→8,320천원, 2.1%), 시멘트선(517→532천원, 2.9%), 기타선(78,525→80692천원, 2.7%)

- 동결 : 1종(선박기관)

③ 항공기

항공기를 신규 수입한 경우 수입면장 가격 및 법인장부 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 결정하되 항공산업의 불황, 환율변동폭(10% 내외)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수준의 시가표준액으로 유지토록 조정하였다.

<조정기준>

- 신규 : 2종(고정익 2)
 - B737-800(515억원), BD700-IA10(418억원)
- 동결 : 104종(고정익 63, 회전익 41)
- 인상 : 1종(고정익 1) : B747-400F(1,047억원→1,334억원)
 - ※ B747-400과 동일하게 조정

④ 특수부대설비(시설물) 및 구축물(건축물)

지방세법시행령개정에 따라 특수부대설비를 부수시설물로, 구축물을 레저시설등 건축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를 레저시설, 저장시설, 도크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조정하였다. 2000. 9월중 생산자 물가지수(한국은행 자료)가 전년동월대비 2.5% 상승하였고, 내년도 경제성장률 6%내외로 예측되므로 레저시설 등의 과표를 평균 3%인상하고 특수부대설비(부수 시설물)은 현 시가를 고려하여 동결조정하였다.

<조정기준>

- 레저시설등 건축물(654종) : 평균 2.93% 인상
 - 신규 : 주유시설(20종)
 - 동화계량기 PRIME8020(13,500천원) 외 19종